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 신설(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안)	2

I. 개요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승래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27.
-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 신설(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안)

현 행	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안
☐ <신설>	☐ <u>특별세액공제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추가(안 제59조의4제5항)</u>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요건: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율 : 15% ○ 공제한도: <u>없음</u>	☐ <u>특별세액공제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추가(안 제59조의4제5항)</u>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공제한도: <u>15만원</u>

* 서영교의원안 2024. 6. 18. 제출(의안번호 579), 조승래의원안 2024. 6. 27. 제출(의안번호 1078)

☐ 2건의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영교의원안은 별도의 공제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반면 조승래의원안은 연 15만원의 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휴대폰 회선 수는 5,674만 6,792개로,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재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지출 가계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인 이상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53만 6,000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1,843만 2,000원)의 4.6%에 달함.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정책과의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취약계층 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감면대상	기본료 및 통화료 35%	월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한도	없음	월 33,500원	월 21,500원		월 11,000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터넷 이용료, 전기요금 등 유사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한 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과 같이 세액공제 적용 시 면세자¹⁾인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 2022년 귀속소득 기준 33.6%